

서울예술영재 음악교육(서부권)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100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년 8월 12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예술영재 음악교육(서부권) 사무는 「문화예술교육지원법」 제5조의2에 의거, 예술에 재능이 있으나 경제적 여건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을 발굴·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예술적 잠재력 발현과 자아실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,
- 나.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을 위하여 경험 및 전문성과 인적·물적 인프라 등이 풍부한 민간에 교육을 위탁·운영 중임
- 다. 공모를 통한 재위탁 추진을 위해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사업개요
- 사업명 : 서울예술영재 음악교육(서부권)
 - 사업내용 : 음악에 재능이 있으며 생활이 어려운 학생을 발굴, 대학 등의 인적·물적 인프라와 전문성을 활용한 체계적인 교육 지원
 - 교육대상 : 생활이 어려운 초·중등생 총 70명
 - 교육기간 : 약 9개월간

나. 주요 위탁 내용

- 위탁기간 : 3년(2025. 1. ~ 2027. 12.)
- 위탁유형 : 사무형 위탁
- 소요예산(안) : 410백만원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재위탁(공개모집)
- 위탁사무 범위
 - 교육생 모집 및 선발, 교육 과정 운영
 - 교육커리큘럼 기획 및 교수진 구성
 - 교육장소 및 협력시설, 교육 기자재 및 물품 확보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3. 문화·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-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제14조(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의 위탁)

제14조(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의 위탁)① 시장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교육 관련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나. 예산조치 : '25년도 예산편성 필요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

※ 작성자 :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심성영 (☎ 2133-2565)